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년월일 : 1998. 2. 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의 적극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새로 정의된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쓰레기재활용”등을 추가규정함(안 제2조)
-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종류 및 허가기준 등을 보완함(안 제2조의2)
- 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규정 함(안 제3조)
- 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 마. 10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자와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감량시설의 설치의무화 및 시설설치비용을 보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 바.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함(안 제9조)
- 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상지급하는 쓰레기 봉투량을 월60리터를 월 40리터로 감량 지급함(안 제16조)
- 아.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등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 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지급 규정삭제(안 제19조)
- 차.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별표3)
- 카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조정(안 별표4)

3.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5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53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내지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6호내지제9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음식물류폐기물 (이하“음식물쓰레기”라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9.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퇴비화·사료화·연료화 및 기타 용도로 재생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4. 대형폐기물수집·운반업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③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제3조중 제2항내지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배출자로서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4]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라 한다)는 동 나목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위탁처리코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고시) 구청장은 법15조제1항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배출자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제3조 제3항에 의한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담아 별도로 보관·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수집장소에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구청장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감량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7호”로 하고, 제5호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제6조 및 제7조”를 “제4조제2호 및 제6조, 제7조”로 하고, 제2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를 “제4조제2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로 하며, 제3항중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하고, 제2항중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을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일반용봉투는”을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으로 하고, 제2항중 “일반용봉투를”을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로 하며, 제4항중 “일반용봉투의”를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제6조제1항제3호에”를 “제2조제7호에”로 하고, 제3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용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20ℓ 봉투 기준)의 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가 배출한 음식쓰레기와 그 부산물을 구청장이 수탁하여 처리할 때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고, 제13조제1항제4호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후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중 “일반용봉투의”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로 한다.

제16조중 “월60리터로 한다.”를 “월60리터로 하되 제1호 해당자는 월40리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일반폐기물의 수거능력보장”을 “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제3조 제3항에의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용기로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는 법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1. 점포·상가·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2. 동일건물내의 사무소·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3.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지역단위 또는 건물 단위로 음식쓰레기만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할 때

②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자체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을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지역내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용자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3]”을(별지1)과 같이한다.

“[별표4]”를(별지2)와 같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은 이조례 시행으로 폐지한다.

(별지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개)

품 명	규 격	수 수 료			비 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냉 장 고	500ℓ 이상	20,000	13,000	7,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료를 준용
	300ℓ 이상	15,000	10,000	5,000	
	300ℓ 미만	10,000	6,000	4,000	
텔레비전	42"이상	5,000	3,000	2,000	
	14"이상	3,000	1,500	1,500	
	14"미만	2,000	1,000	1,000	
세 탁 기	용량8kg이상	6,000	4,000	2,000	
	용량8kg미만	4,000	3,000	1,000	
에 어 콘 (실외기또는실내기)	264㎡형이상	12,000	9,000	3,000	
	66㎡형이상	8,000	6,000	2,000	
	66㎡형미만	6,000	5,000	1,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2,000	2,000	
	높이1m미만	3,000	1,500	1,500	
탈 수 기	모든규격	3,000	2,000	1,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7,000	4,000	3,000	
	높이1m미만	5,000	3,000	2,000	
장 농	120cm1짝	15,000	10,000	5,000	
	90cm1짝	10,000	6,000	4,000	
침 대 (매트리스포함)	2인용	15,000	10,000	5,000	
	1인용	10,000	6,000	4,000	
매트리스	2인용	9,000	5,000	4,000	
	1인용	6,000	4,000	2,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			비 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소 파	5인용이상	10,000	6,000	4,000	
	3인용	6,000	4,000	2,000	
	1인용	3,000	2,000	1,000	
책 상	양수,대형	7,000	4,000	3,000	
	편수,소형	5,000	3,000	2,000	
피아노	그랜드	20,000	12,000	8,000	
	어프라이트	15,000	9,000	6,000	
식 탁	6인용 이상	6,000	4,000	2,000	
	6인용 미만	4,000	2,000	2,000	
싱크찬장	2칸	4,000	2,000	2,000	
	1칸	3,000	1,500	1,500	
싱크대	大1좌당	10,000	7,000	3,000	
	小1좌당	8,000	6,000	2,000	
서랍장	5단이상	10,000	7,000	3,000	
	5단미만	7,000	5,000	2,000	
문 갑	1좌당	4,000	2,000	2,000	
신발장	높이1m이상	5,000	3,000	2,000	
	높이1m미만	4,000	2,000	2,000	
선풍기	모든규격	1,000	500	500	
화장대	모든규격	5,000	3,000	2,000	
전 축	모든규격	5,000	3,000	2,000	
PC모니터	모든규격	3,000	1,500	1,500	
PC본체	모든규격	3,000	1,500	1,500	
프린터기	모든규격	3,000	1,500	1,500	
팩시밀리	모든규격	2,000	1,000	1,000	
복사기	모든규격	10,000	7,000	3,000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3,000	2,000	1,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			비 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의 자	목 재	2,000	1,000	1,000	
	철 재	1,500	1,000	500	
가방류	모든규격	1,000	500	50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1,000	1,000	
청소기	모든규격	3,000	2,000	1,000	
캐비닛	높이1m이상	7,000	4,000	3,000	
	높이1m미만	4,000	2,000	2,000	
쌀 통	모든규격	3,000	2,000	1,000	
벽시계	모든규격	2,000	1,000	1,000	
정수기	모든규격	2,000	1,000	1,000	
문 · 작	모든규격	4,000	3,000	1,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3,000	2,000	1,000	
재봉틀	모든규격	3,000	2,000	1,000	
형광등류	장식용	5,000	3,000	2,000	
	일반용	1,000	500	500	
가스·기름 보일러	모든규격	7,000	4,000	3,000	
기름탱크	2드럼이상	6,000	4,000	2,000	
	2드럼미만	4,000	3,000	1,000	
물탱크 (FRP)	5드럼이상	20,000	15,000	5,000	
	5드럼미만	15,000	10,000	5,000	
기 타	스치로폴 포장재, 책꽂이, 옷걸이, 이불등	2,000	1,000	1,000	

(별지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시또는 위반시 마다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린자	50천원		
2.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100천원		
3. 대형폐기물(가구가전제품등)을 버린자	200천원		
4.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자	200천원		
5.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5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린자(법제2조제3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외)	1,000천원		
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감량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4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이외의 폐기물배출자의 경우(제6조제1항 위반자 포함)	50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시또는 위반시마다	2차위반	3차위반
다.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명령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 자의 경우	4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2. 일반가정의 경우	50천원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100천원	200천원	400천원

-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한하며 3차이상 위반시는 3차위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는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구청장은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u></p> <p>2. <u>“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구등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u></p> <p>3. <u>“건설폐기물”이라 함은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건축, 토목공사(철거·보수공사 포함)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u></p> <p>4. <u>“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u></p>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u></p> <p>2. <u>“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u></p> <p>3. <u>“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u></p> <p>4. <u>“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u></p>

현행	개정(안)
<p>5.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신설></p>	<p>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p>
<p><신설></p>	<p>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신설></p>	<p>8. "음식물류폐기물 (이하"음식물쓰레기"라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p>
<p><신설></p>	<p>9.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퇴비화·사료화·연료화 및 기타 용도로 재생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신설></p>	<p>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4. 대형폐기물수집·운반업 <p>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생략)</p> <p>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소각·퇴비화시설등 적절한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③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등을 지정 할 수 있다.</p> <p>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현행과 같음)</p> <p>②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p> <p>③음식물쓰레기 배출자로서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4]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자(이하“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라 한다)는 동 나목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위탁처리코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p> <p>제3조의2(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고시) 구청장은 법15조제1항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배출자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p>
<p>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 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5조(보관시설등 설치관리) ①~④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 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p>	<p>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제3조 제3항에 의한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담아 별도로 보관·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수집장소에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조(보관시설등 설치관리) ①~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p>제5조의2(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구청장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감량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 ----- -----</p>

현행	개정 (안)
<p>1.~2(생략)</p> <p>3. 제2조 제2호에 의한 대형폐기물</p> <p>4. (생략)</p> <p>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p> <p>6. (생략)</p> <p>②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2조 제7호 -----</p> <p>4. (현행과 같음)</p> <p>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p> <p>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생략)</p>	<p>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p> <p>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제28조, 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있다.</p>	<p>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제4조제2호 및 제6조, 제7조-----</p> <p>② -----제4조제2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p> <p>③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p>
<p>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 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p>	<p>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등) ① -----일반 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p>

현행	개정(안)
<p>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p> <p>③ (생략)</p>	<p>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 만을, 공공용봉투에는 ----- -----</p> <p>③ (현행과 같음)</p>
제10조(생략)	제10조(현행과 같음)
<p>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p> <p>②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일반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 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 ----- -----</p> <p>② ----- -----일반용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 ----- ----- -----</p> <p>⑤~⑥ (현행과 같음)</p>
제12조(생략)	제12조(현행과 같음)
<p>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생략)</p>	<p>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 ----- ----- -----</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대형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p>	<p>2. 제2조 제7호에 ----- -----</p>
<p><신설></p>	<p>3.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배출용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20ℓ봉투 기준)의 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4.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가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와 그 부산물을 구청장이 수탁하여 처리할 때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생략)</p>	<p>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p>	<p>② ----- 징수할 수 있고, 제13조제1항제4호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후납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p>	<p>제15조(쓰레기봉투의 매수) -----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p>
<p>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1인당 월60리터로 한다.</p>	<p>제16조(수수료의 감면)----- ----- ----- 월60리터로 하되 제1호 해당자는 월40리터로 한다.</p>
<p>1.~3.(생략)</p>	<p>1.~3.(현행과 같음)</p>
<p>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 능력 보장) ①~③ (생략)</p>	<p>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③(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④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제3조 제3항에 의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용기로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8조(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처리자(이하“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p><신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가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9조(무단투기등신고포상금지급)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20조~제24조 (생략)</p>	<p>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포·상가·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2. 동일건물내의 사무소·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3.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지역단위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쓰레기만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p>② 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자체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의2(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지역내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9조(삭제)</p> <p>제20조~제24조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3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원/개)				[별표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3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원/개)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파쇄)등	비 고	품 명	규 격	수 수 료			비 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냉장고	500ℓ 이상	4,000	4,000		냉장고	500ℓ 이상	20,000	13,000	7,000	
	300ℓ 이상	3,000	3,000			300ℓ 이상	15,000	10,000	5,000	
	300ℓ 미만	2,000	2,000			300ℓ 미만	10,000	6,000	4,000	
텔레비전	42" 이상	3,000	2,000		텔레비전	42" 이상	5,000	3,000	2,000	
	12" 이상	2,000	1,000			14" 이상	3,000	1,500	1,500	
						14" 미만	2,000	1,000	1,000	
세탁기	모든규격	2,000	2,000		세탁기	용량8kg 이상	6,000	4,000	2,000	
						용량8kg 미만	4,000	3,000	1,000	
에어콘	264㎡형 이상	4,000	4,000	품명예명시 되지않은대 형폐기물은 종류및규격 을감안하여 유사한품목 의수수료를	에어콘 (실외기 또는 실내기)	264㎡형 이상	12,000	9,000	3,000	품명예명시 되지않은대 형폐기물은 종류및규격 을감안하여 유사한품목 의수수료를
	66㎡형 이상	3,000	2,000			66㎡형 이상	8,000	6,000	2,000	
	66㎡형 미만	2,000	1,000			66㎡형 미만	6,000	5,000	1,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 이상	2,000	2,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 이상	4,000	2,000	2,000	
	높이1m 미만	1,000	1,000			높이1m 미만	3,000	1,500	1,500	
탈수기	모든규격	1,000	1,0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2,000	1,000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1,000	1,000	준용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7,000	4,000	3,000	준용
						높이1m 미만	5,000	3,000	2,000	
장 능	120cm 직	10,000	5,000		장 능	120cm 직	15,000	10,000	5,000	
	90cm 직	6,000	4,000			90cm 직	10,000	6,000	4,000	
침 대	2인용	10,000	5,000		침 대	2인용	15,000	10,000	5,000	
	1인용	6,000	4,000			(매트리스 포함)	1인용	10,000	6,000	
	매트리스	5,000	4,000		매트리스		2인용	9,000	5,000	4,000
						1인용	6,000	4,000	2,000	

현 행					개 정 안					
품 목	규 격	수집·운반	처리(소각 파쇄)등	비 고	품 명	규 격	수 수 료			비 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소 파	3인용	3,000	2,000		소 파	5인용이상	10,000	6,000	4,000	
						3인용	6,000	4,000	2,000	
1인용	3,000	2,000	1,000							
책 상	양수,대형	3,000	2,000		책 상	양수,대형	7,000	4,000	3,000	
	편수,소형	2,000	2,000			편수,소형	5,000	3,000	2,000	
피아노	그랜드	10,000	5,000		피아노	그랜드	20,000	12,000	8,000	
	어프라이트	6,000	4,000			어프라이트	15,000	9,000	6,000	
식 탁	6인용이상	3,000	2,000		식 탁	6인용이상	6,000	4,000	2,000	
	6인용미만	2,000	2,000			6인용미만	4,000	2,000	2,000	
기 타	선풍기, 보통의자, 문짝,스치로 폴포장재, 이불등	1,000	500		싱크찬장	2칸	4,000	2,000	2,000	
						1칸	3,000	1,500	1,500	
					싱크대	대1짝당	10,000	7,000	3,000	
						소1짝당	8,000	6,000	2,000	
					서랍장	5단이상	10,000	7,000	3,000	
						5단미만	7,000	5,000	2,000	
					문 갓	1짝당	4,000	2,000	2,000	
					신발장	높이1m이상	5,000	3,000	2,000	
						높이1m미만	4,000	2,000	2,000	
					선풍기	모든규격	1,000	500	500	
					화장대	모든규격	5,000	3,000	2,000	
					전 축	모든규격	5,000	3,000	2,000	
					PC모니터	모든규격	3,000	1,500	1,500	
					PC본체	모든규격	3,000	1,500	1,500	
					프린터기	모든규격	3,000	1,500	1,500	
					팩시밀리	모든규격	2,000	1,000	1,000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품 명	규 격	수 수 료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복사기	모든규격	10,000	7,000	3,000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3,000	2,000	1,000		
의 자	목 재	2,000	1,000	1,000		
	철 재	1,500	1,000	500		
가방류	모든규격	1,000	.500	50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1,000	1,000		
청소기	모든규격	3,000	2,000	1,000		
캐비넷	높이1m이상	7,000	4,000	3,000		
	높이1m미만	4,000	2,000	2,000		
쌀 통	모든규격	3,000	2,000	1,000		
벽시계	모든규격	2,000	1,000	1,000		
정수기	모든규격	2,000	1,000	1,000		
문 짝	모든규격	4,000	3,000	1,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3,000	2,000	1,000		
개봉틀	모든규격	3,000	2,000	1,000		
형광등류	장식용	5,000	3,000	2,000		
	일반용	1,000	500	500		
가스기름 보일러	모든규격	7,000	4,000	3,000		
기름탱크	2드럼이상	6,000	4,000	2,000		
	2드럼미만	4,000	3,000	1,000		
물탱크 (FRP)	5드럼이상	20,000	15,000	5,000		
	5드럼미만	15,000	10,000	5,000		
기 타	스치로폴 포장재, 책꽂이, 옷걸이, 이불등	2,000	1,000	1,000		

현행

개정안

[별표4]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관련)

[별표4]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관련)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시 또는 위반시마다	2차위반	3차위반
가. (생략)			
1. 널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낱배풍초, 휴지 등)을 버린자	25천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50천원		
3-5. (생략)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린자(법제14조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법제17조제1항의 처리업자는 제외)	1,000천원		
나. (생략)			
1.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4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2. 다량배출자 -----	50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시 또는 위반시마다	2차위반	3차위반
가. (현행과 같음)			
1. -----	50천원		

2. -----	100천원		

3-5 (현행과 같음)			
6. -----	-----		

(법제2조제3항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법제26조의 폐기물 처리업자, 법제44조의2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자는 제외)			
나. (현행과 같음)			
1. 법제24조 -----	-----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배출자 ---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	-----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시 또는 위반시마다	2차위반	3차위반
다. (생략)			
1.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4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2-3 (생략)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시 또는 위반시마다	2차위반	3차위반
다. (현행과 같음)			
1. 법제24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	-----	-----
2-3 (현행과 같음)			

-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위반행위자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한하며 3차이상 위반시는 3차우 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유사한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 구청장은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 경우는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
”에 의한다.
- -----

